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상품권 관리지침 이행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○○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○○과는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계약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」(국민권익위원회 권고, 2013. 9. 27)에 따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,

서울특별시 양천구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(감사담당관-9748, 2019.11.21.)에 따르면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① 구매목적, 구매수량, 예산과목, 구매처, 배부일자,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‘상품권 등 구매·배부 관리대장’을 관리하여야 하고 ②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에 대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○○과는 ○○○○ 위문품, ■■■■■ ■■■■■ 포창 등의 사유로 상품권을 구매하였으나, 이에 대한 구매 및 사용 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○○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○○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